

#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3
----------	------

제출일자 : 2016. 8.

제 출 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신설 기관 설립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 및 각종 기관명칭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칭 정정을 하고 통합지원본부의 관장사무를 구체화하고 군·경 합동 사무실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달성군통합방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신설 기관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각종 명칭 변경된 기관의 명칭 정정(안 제3조)
-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 직위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위명칭 정정(안 제5조)
-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관장사무를 구체화하고 지원본부장의 역할을 명시(안 제10조)
- 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11조제3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6. 7. 27. ~ 8. 16.(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달성군통합방위협의회, 달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달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지역주민 등의”를 “지역주민·학생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45인 이내”를 “60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을 “협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달성군의회 의장
2.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장
3. 대구지방보훈청장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달성경찰서장
6. 달성교육장
7. 달성소방서장
8. 강서소방서장

9. 대구교도소장
10. 군지역 재향군인회장
11. 농업협동조합 군지부장
12. 군 산림조합장
13. 군 축산업협동조합장
14. 달성우체국장
15. 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점장
16. KT 달성지점장
17. KT&G 달성지점장
18.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부장
19. 국민연금관리공단대구달성고령지사장
20.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협의회 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에”를 “협의회의 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 군부대 작전참모”를 “달성대대 작전과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대리근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 군부대 예비군 담당관”을 “달성군 기동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군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없는 때에는”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협의회에”를 “협의회 회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을 “의장이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 각 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본부”를 “달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시행령"을 "「통합 방위법 시행령」"으로 하며, "에 규정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인내지 9인의"를 "3인부터 9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군 지원본부장은 읍·면 지원본부의 기능 발휘 및 활성화를 위해 지도·감독 책임을 갖는다.
- ⑦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 ⑧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조 및 사업집행 사항의 협의·조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군 지원본부와 읍·면 지원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각 지원본부의 상황실 및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그 합동상황실장은 달성대대 작전과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대리근무자) 또는 달성경찰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제12조제1호다목 중 "조직·운영"을 "조직·운영(주민신고망 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상"을 "수상한 사항에 대한"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달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b>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li> <li>가. (생략)</li> <li>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과 지원대책</li> <li>다. ~ 라. (생략)</li> <li>3. ~ 4. (생략)</li> <li>5.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li> </ol> <p><b>제3조(협의회의 구성)</b></p> <p>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장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달성군통합방위협의회, 달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b> 달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 - -</li> <li>가. (현행과 같음)</li> <li>나. - - - - - 지역주민·학생 등의 - - - - -</li> <li>다. ~ 라. (현행과 같음)</li> <li>3. ~ 4. (현행과 같음)</li> <li>5. 그 밖에 - - - - -</li> </ol> <p><b>제3조(협의회의 구성)</b></p> <p>① - - - - - - - - - 60인 이내 - - - - - - - .</p> <p>②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 - - - , 협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회 의장</u></li> <li>2. <u>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장</u></li> <li>3. <u>국가정보원 관계자</u></li> <li>4. <u>달성경찰서장</u></li> <li>5. <u>달성교육장</u></li> <li>6. <u>달성소방서장</u></li> <li>7. <u>대구교도소장</u></li> <li>8. <u>농업협동조합 군지부장</u></li> <li>9. <u>군 산림조합장</u></li> <li>10. <u>군 축산업협동조합장</u></li> <li>11. <u>달성우체국장</u></li> <li>12. <u>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점장</u></li> <li>13. <u>KT 달성지점장</u></li> <li>14. <u>KT&amp;G 달성지점장</u></li> <li>15. <u>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장</u></li> <li>16. <u>국민연금관리공단달성지사장</u></li> <li>17. <u>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u></li> </ol> <p><b>제4조(위원의 임기)</b>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 기간으로 한다.</p>	<p>③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달성군의회 의장</u></li> <li>2. <u>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장</u></li> <li>3. <u>대구지방보훈청장</u></li> <li>4. <u>국가정보원 관계자</u></li> <li>5. <u>달성경찰서장</u></li> <li>6. <u>달성교육장</u></li> <li>7. <u>달성소방서장</u></li> <li>8. <u>강서소방서장</u></li> <li>9. <u>대구교도소장</u></li> <li>10. <u>군지역 재향군인회장</u></li> <li>11. <u>농업협동조합 군지부장</u></li> <li>12. <u>군 산림조합장</u></li> <li>13. <u>군 축산업협동조합장</u></li> <li>14. <u>달성우체국장</u></li> <li>15. <u>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점장</u></li> <li>16. <u>KT 달성지점장</u></li> <li>17. <u>KT&amp;G 달성지점장</u></li> <li>18. <u>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부장</u></li> <li>19. <u>국민연금관리공단대구달성고령지사장</u></li> <li>20. <u>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u></li> </ol> <p><b>제4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b> ----- ----- -----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p>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간사 등)</b>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u>회의에</u>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전담당간사 : <u>지역 군부대 작전참모</u></li> <li>2. 예비군담당간사 : <u>지역 군부대 예비군 담당관</u></li> <li>3. (생략)</li> <li>4.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u>행정지원과장</u></li> </ol>	<p><b>제5조(간사 등)</b> ----- ----- 협의회 회의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달성대대 작전과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대리근무자)</u></li> <li>2. ----- : <u>달성군 기동대장</u></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 : <u>자치행정과장</u></li> </ol>
<p><b>제6조(의장의 직무 등)</b> ① (생략)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6조(의장의 직무 등)</b>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을 때에는 -----.</p>
<p><b>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b>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u>달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협의회에</u>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li> <li>2. <u>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u> 안건의 심의</li> <li>3. (생략)</li> </ol> <p>② (생략)</p>	<p><b>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b>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협의회 회의에</u> -----</li> <li>2. <u>의장이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u>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b>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b>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p>	<p><b>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b> ----- ----- -----.</p>

현행	개정안
<p>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 방위협의회</p> <p>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 민방위협의회</p> <p><b>제10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b></p> <p>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5. (생략)</p> <p>6.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p> <p>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p> <p>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읍면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p> <p>③ 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p> <p>④ (생략)</p> <p>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읍면은 주사 또는 담당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p>	<p>1. _____ 에 따른 _____</p> <p>2. _____에 따른 _____</p> <p><b>제10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b></p> <p>① _____ _____ 달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 _____ _____</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통합방위법 시행령」 _____에 따른 _____</p> <p>7. 그 밖에 _____</p> <p>② _____ _____ 자 치행정국장 _____ _____.</p> <p>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인부터 9인까지의 _____ _____.</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_____ _____ 팀장 _____ _____.</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p> <p><b>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b> ① 제10조 제1항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p> <p>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p> <p><b>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b>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⑥ <u>군 지원본부장은 읍면 지원본부의 기능 발휘 및 활성화를 위해 지도·감독 책임을 갖는다.</u></p> <p>⑦ <u>통합방위작전과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u></p> <p>⑧ <u>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조 및 사업집행 사항의 협의·조정</u></p> <p>⑨ <u>(현행 제6항과 같음)</u></p> <p><b>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b>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군 지원본부와 읍면 지원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각 지원본부의 상황실 및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p> <p>② 제1항의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그 합동상황실장은 달성대대 작전과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대리근무자) 또는 달성경찰서의 계장급으로 한다.</p> <p><b>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b></p> <p>-----</p> <p>-----</p> <p>-----.</p>

현행	개정안
<p>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나. (생략) 다. 취약지내 주민신고망의 <u>조직·운영</u> 라. ~ 바. (생략)</p> <p>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u>각 목의 1</u>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 라. (생략)</p> <p>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생략) 나. 자체 <u>수상</u>에 대해 순찰활동의 실시</p>	<p>1.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u>조직·운영</u> <u>(주민신고망 점검은 연2회 이상 실시)</u> 라. ~ 바. (현행과 같음)</p> <p>2. ----- <u>각 목의 어느 하나</u> ----- 가. ~ 라. (현행과 같음)</p> <p>3.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수상한 사항에 대한</u> --- -----</p>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